

■ 구비서류 안내[제반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서류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견본주택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용)	본인 및 세대원	•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 비치(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후 제출)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직접 서명(정자이름날인)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용도 : 서류접수 및 계약 / 제출처 :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 기재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불가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세대주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전부공개)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여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혼인하지 않은 미혼세대의 경우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사실 여부 증빙을 위하여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를 포함) 하여 “상세”로 발급 (“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출입국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배점기준표		• 견본주택에 비치
추가서류 (해당자)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 명령서(직인날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발급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자 또한 인정 불가
	한부모가족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 전인 자녀(출생신고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출산특례 관련] 현재 태아가 있을 시 임신진단서 제출 20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나 아직 출생신고 전일 시 출생증명서 제출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 구비서류 안내[제반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추가서류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023.0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산특례 관련] 2024.06.19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양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통장사본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 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령내역		•[출산특례 관련]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 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 급여수령내역 또는 거래내역 등 발급 시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계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계좌번호, 생년월일, 발급일자, 발급번호, 입금자명 등) 포함(단순열람용 서류 또는 캡처본 불인정) ※ 조회기간 자녀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상기 등본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전체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전부공개)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3세대 이상 세대구성으로 신청하였으나 주민등록표등본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전부공개)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일반” 또는 “특정” 발급 시 불인정)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상기 초본 발급 방법과 동일하게 “전체포함”하여 발급)
	출입국사실증명		•단신부임임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 및 세대원의 해외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01.0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01.01.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체 표시,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기록대조일 동일) 모두 제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이 해당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통보받은 해당자	무주택 소명 서류	해당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기관의 당점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대리인 접수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첨자 본인	•용도: 위임용(본인 발급용)_당첨자 기준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청약 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